

# 프랑스의 장기 학교결석방지 법제

신청기관 ▶ 서울시의회전문도서관

## I. 서론

프랑스 공교육제도는 1789년 프랑스혁명, 1881년부터 1889년 간 채택된 교육관련 법률, 제4공화국 및 제5공화국 법률과 및 1946년 10월 27일 프랑스 헌법 전문에서 규정한 교육의 자유·무상교육·정치적 중립·정교분립 및 의무교육 원칙에 근거를 둔다.

1882년 3월 28일자 줄 페리(Jules Ferry)법률(의무기초교육에 관한 법률 : Loi sur l'enseignement primaire obligatoire)은 6세부터 13세 아동의 의무교육을 규정했으며, 상기 조항의 의무교육 연령의 범위를 확장한 1959년 1월 6일자 명령 n°59-45에 준거해 교육법전 제L131-1조는 6세부터 16세 아동 및 청소년의 의무교육을 규정한다. 또한 상기 의무교육은 공립 또는 사립학교, 또는 양친 또는 양친이 정한 모든 자연인에 의해 가정에서 이행될 수 있다.(제L131-2조) 한편, 상기 의무교육원칙에 준거해 교육당국의 입학통고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학교등록을 거부한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는 1998년 12월 18일자 교육의무감독강화에 관한 법률 n°98-1165(Loi n°98-1165 du 18 décembre 1998 tendant à renforcer le contrôle de l'obligation scolaire)에 준거해 법률위반행위를 구성한다.

학교결석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학업에 참여해야 하는 학생이 출석의무를 준수

하지 않는 행위'라고 간주한다.<sup>1)</sup> 2004년 1월 2일자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n°2004-1(Loi n°2004-1 du 2 janvier 2004 relative à l'accueil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은 법률 제정 이유서에서 “아동의 꾸준한 학교출석은 아동을 위한 의무, 부모를 위한 의무 및 가족을 위한 기회”라고 언급하면서 결석없는 학교출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기 법률 제정 이유서처럼 프랑스 정부는 지속적인 학교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장기결석방지에 교육정책의 최우선적인 위치를 부과했다. 2014년 12월 24일자 행정부처간 공고문(Circulaire interministérielle n°2014-159 du 24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bsentéisme scolaire) 전문은 “학교결석 방지는 교육관련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하는 절대적인 우선권을 구성한다. 교육의무의 귀속여부에 관계없이 각각의 학생은 교육을 받을 권리, 즉 학업성공의 1차 조건인 지속적인 학업의무 준수에 당연한 귀결이 되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의무교육의 성공을 위한 1차적인 조건으로서 지속적인 학교출석을 언급한다. 지속적인 학교출석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법전은 학생의 학교출석에 대한 관리감독과 학생의 반복적인 장기결석의 경우 해당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에 대한 학교장의 개입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결석방지 조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최종적으로 검찰고발을 통한 형법상의 징벌을 규정한다.

지속적인 상기 의무교육 실행에 불가결한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결석 방지를 위해 각 시장 및 도지사는 2007년 3월 5일자 청소년범죄 방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정된 교육법전 제L131-6조에 준거해 담당 교육구역의 의무교육 해당 아동에 관한 개인 정보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2015년 2월에 발간된 학교장기결석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4년간 프랑스의 학교결석율은 중학교 2.8%, 일반 및 기술고등학교 4.6%, 직업고등학교 11.5%로 전체 결석율은 4%에 달하며, 이중 정당한 이유로 인한 결석학생은 평균수업시간의 5.1%를 상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에 의한 결석으로 인한 평균 수업시간 상실률은 1.2%이며, 이중 한달에 10일 이상 결석하는 학생은 전체 학교학생 중 1%를 차지한다.<sup>2)</sup>

1)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899>.

2) DEPR, *L'absentéisme des élèves continue à être très élevé dans une partie des lycées professionnels*, Février 2015, p.1.

한편 2013년 1월 31일자 학교결석방지에 관한 법률 n°2013-108 (Loi n°2013-108 du 31 janvier 2013 visant à lutter contre l'absentéisme scolaire)에 준거해 개정된 교육법전 제L131-8조는 결석학생에 관한 학교장의 교육청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결석사유를 결정하는 조치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결석학생에 관한 신고가 체계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공립초등학교의 장기결석학생 신고율은 평균 0.4%, 중학교는 0.3~0.4%, 고등학교는 0.2~0.6%로 전국 평균신고율은 0.4%에 달한다. 재결석신고율의 경우, 전월 결석한 학생의 차월 재결석 신고율은 월에 따라 30~46%에 달한다. 사립초등학교의 장기결석학생 신고율은 0.01~0.03%이며,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만 장기결석 신고율이 0.05%이다.

한편 도(Département)에 따른 장기 학교결석 신고율은 평균 0.4%이지만, 8개 도의 경우 1%를 초과한다. 해당 도는 알프-마리팀프(2%), 마른느(2.5%), 빠레네-오리앙탈(2.2%), 바-랭(1.7%), 솜르(1.1%), 보클뤼즈(1.3%), 페리투와르 드 벨포르(1.2%), 과들루프(2.7%)이다. 12개 도(엔느, 부슈-뒤-론느, 두, 루와르, 로, 로-앙-가론느, 모젤, 우와즈, 쏘-에-루와르, 보쥬, 발-두와즈, 귀이안느)의 장기결석 평균신고율은 0.4%이다. 기타 도의 장기결석 평균 신고율은 0.02~0.32%이다.<sup>3)</sup>

장기 결석 방지를 위한 프랑스 법제는 다양한 법률 및 시행법령에 의해 개정된 교육법전(Code de l'éducation) 제III절(교육의무, 무상교육 및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입학) 제1장(교육의무) 제L131-1조~제L131-12조 외 기타 조항에 준거한다. 학교결석방지에 관한 2010년 9월 28일자 법률n°2010-1127 폐지에 관한 2013년 1월 31일자 법률 n°2013-108(Loi n°2013-108 du 31 janvier 2013 tendant à abroger la loi n°2010-1127 du 28 septembre 2010 visant à lutter contre l'absentéisme scolaire)은 이전 법률이 규정했던 장기학교결석아동 가정에 대한 가족연금 중단과 부모책임계약에 관한 교육법전의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는 법조항 적용을 개선하고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절차를 제시했

3) Ibid, p.4.

다. 상기 규정은 학교결석방지에 관한 2014년11월18일자 법령n°2014-1376(Décret n°2014-1376 du 18 novembre 2014 relatif à la prévention de l'absentéisme scolaire)과 학교결석방지에 관한 2014년 12월 24일자 행정부처간 공고문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상기 법률에 의해 규정된 장기학교결석 방지에 관한 법제 내용은 장기결석방지를 위한 제도이행 기구, 절차 및 제도 그리고 형벌규정으로 구성된다.

## II. 이행 기구

### 1. 학교

#### (1) 학생출석감독 책임에 대한 정보제공

프랑스 법제는 교육 5대 원칙의 하나인 의무교육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유지와 학생의 학업낙제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낙오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당국 및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장기결석 방지체계를 실행하며, 법률과 제도를 통해 강화한다.

장기결석 방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와 학부모와의 유대강화가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인식되어 학생의 최초입학 시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책임자의 일원인 부모에게 학부모간담회를 통한 교육계획과 학교내부규정 소개를 통해 학부모로 하여금 꾸준한 학교출석감독방법과 결석 신고조건을 인지하게 하여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꾸준한 학교생활감독을 이행하게 한다.<sup>4)</sup>

4) Code de l'éducation 제L401-3조, *bid* 제L131-4조, *Ibid* 제L111-1조.

## (2) 결석 관리

각각의 공, 사립학교의 모든 반에는 해당 반의 학생의 출결상황을 등록하는 출석부를 사용해야 하며, 학기 중 학생의 학업활동 책임자는 소속 학교의 내부규정에 열거된 방식에 준거해 학기 중 결석학생의 결석을 신고해야 한다. 학생의 결석은 즉시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에게 통고되고 통고를 받은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는 학교장에게 해당 학생의 결석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예정된 결석일 경우,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는 해당 학생의 결석 이전에 학교장에게 상세한 결석사유를 미리 통보해야 한다. 상기 결석사유의 타당성에 심각한 의심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은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를 학교로 소환해 국립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에게 제출할 결석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sup>5)</sup> 한편 출석부 결석등록의 경우, 정보처리, 문서 및 자유에 관한 1978년 1월 6일자 법률 n°78-17제23조에 준거해 전자등록이 우선시 된다.

## 2. 도(Département)

학교 장기결석을 방지하기 위한 도 단위 기구로는 도교육청, 청년사법보호지방국(DTPJJ), 도단위사회연대국(DDCS), 가족연금기구(CAF) 및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장기결석방지를 위해 각 기관 간의 업무조화와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sup>6)</sup>

청년사법보호지방국은 법무부 소속으로 범죄청소년 또는 범죄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관한 법률, 법령 초안 작성, 범죄청소년 또는 범죄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지원으로서 해당 청소년의 사회적 상황을 평가하는 조사수단을 검찰에 제공, 법원판결 이행을 위해 1,500개에 달하는 청소년 보호시설에 해당 청소년 배치, 청소년교도소 또는 미성년자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의 교육 지원, 법원위임 하의 청소년보호시

5) *Ibid*, 제R131-5조.

6) Circulaire interministérielle n°2014-159 du 24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 l'absentéisme scolaire 부칙 제2조.

설에 대한 감독 및 평가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보호청소년을 위한 교육활동, 사회, 학교 및 직업복귀활동을 주도한다.

도단위사회연대국은 도지사를 보조해 사회복지정책, 주거, 도시정책, 청소년정책(미성년자 단체보호, 도 단위 교육정책 등), 스포츠, 시민단체 및 도민보호 임무를 담당한다. 가족연금기구는 가족연금, 아동교육지원금, 육아지원금의 지급업무를 담당한다.

### 3. 학구 교육청

각 학구교육청장은 장기 결석방지를 위한 소속 학교의 결석방지 경험과 학구교육청의 결석방지 정책 간의 합의를 유도하며, 장기결석율이 높은 중고등학교에 대한 특별조치를 이행한다.

## Ⅲ. 장기 결석방지 대책

### 1. 장기 결석 경보

각 공·사립 학교는 각 반에 학생의 결석이 기재되는 출석부를 배치한다. 학생의 학기활동을 책임지는 모든 인원은 학교내부규정에 준거해 학생의 결석상황을 신고한다.

결석이 발생할 경우, 학교당국은 결석이유를 인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 특히 전화, SMS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결석 학생의 책임자 또는 부모에게 결석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예고가능한 결석의 경우,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는 학교장에게 구체적인 결석이유를 결석일 이전에 통보한다. 결석사유의 타당성에 의심이 있을 경우, 학교장은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에게 결석허가신청서를 제출토록 해 이를 학구교육청장을 대리하는 국립교육서비스의 학구국장에게 전달한다.<sup>7)</sup>

7) Code de l'éducation, 제R131-5조.

한편 학생이 일시적으로 결석을 할 경우,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는 즉시 학교장에게 결석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결석사유로는 학생의 질병, 가족 간의 전염병, 가족의 경조사, 우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결석통보가 불가능한 경우,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를 동반함으로써 발생한 학생의 일시적인 결석이 인정된다. 기타 결석사유는 담당교육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상기 기관은 결석사유의 정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문을 기관이 인정한 사회지원단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상기 단체에 결석학생에 대한 검사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학교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에게 결석을 방지할 경우 적용가능한 형법상 징벌과 부모가 채택할 수 있는 부모동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경고장을 발송하기 위해 관할 교육기관에 상기 경고장을 요청한다.

- 학교장의 소환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가 학생의 결석사유를 통보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결석사유를 통보할 경우
- 정당한 결석사유나 타당한 해명 없이 학생이 한달간 최소 4일을 결석한 경우

학생이 지속적으로 결석할 경우,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에게 적합한 지원과 동반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해 관련 교육단체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회의를 소집해 회의에서 지정한 담당교육인원으로 하여금 학교에서 실행하는 결석방지조치를 이행하게 한다.

이후 학교장은 상기 결정을 지방자치단체와 결석 및 낙제방지 사회단체가 지정한 아동보호조치 담당기관에 통보한다. 상기 단체는 교섭상대자로서 학교장에게 단체의 결정을 통보해야 하며, 부모동반과 결석방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sup>8)</sup>

8) *Ibid*, 제L131-8조.

## 2. 장기결석 대처 방안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교사는 학생의 결석을 탐지하기 위해 담당 학생의 출석상황을 검사하며, 학생의 결석을 인지할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이를 통보하며, 학교장은 결석학생의 결석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에게 결석사실을 통보한다. 학생의 결석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경우 학교장은 담임교사와의 긴밀한 협조 하에 해당 학생을 소환해 결석없는 학업의무를 주지시킨다. 결석학생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징벌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장기결석이 발생할 경우 결석의 기간에 따라 각 학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한다.<sup>9)</sup>

### (1) 3, 4일 간의 결석

#### 1) 초등학교

한 달 동안 정당한 사유없는 결석 3일 차부터 교육담당팀이 소집되며, 학교장은 학생의 가정방문이 포함되는 학생의 환경조사를 위해 학교의 사회보장서비스팀에 결석사실을 통보한다.

한 달 동안 정당한 사유없는 결석 4일 차부터 학교장은 교육담당팀회의를 소집하고, 동시에 학생의 결석행위의 근원을 조사하며, 해당 결석행위의 치유를 위한 조치를 상기 회의에 제안한다. 이어서 결석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를 소환하여 상기 조치를 요약한 서류에 사인을 받는다. 이후 해당 학구를 관할하는 국립교육청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장기결석이 지속될 경우, 학교장은 교육팀과 해당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가 참가하는 회의를 소집해 해당 장기결석 해결에 적합한 지원과 동반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이를 관할 국립교육청장에게 통보한다.

9) *Ibid*, 제D321-16조, 제R511-19-1조, 제R131-6조.



## 2) 중고등학교

한 달 동안 정당한 사유없는 결석 3일 차부터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를 소환해,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의 의무를 주지시키며 의무 위반 시 상응하는 조치에 대한 설명을 전달한다. 또한 학생의 현 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학교의 사회복지서비스에 결석상황을 통보할 수 있다. 상기 평가활동에는 해당 학생의 가정방문도 포함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정당한 사유없는 결석 4일 차부터 학교장은 교육위원회를 소집하며, 결석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이후, 상기 해결방안을 요약한 문서에 해당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의 서명을 받기 위해 상기 책임자 또는 부모를 소환한다. 학교장은 이후 상기 절차를 지방교육청장에게 통보한다.

만약 해당 학생의 결석이 장기화될 경우, 지방교육청장은 교육팀과 해당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가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해 장기결석 해결에 적합한 지원 및 동반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3) 도 교육기관

한 달 동안 4일의 장기결석을 통보받은 후, 지방교육청장은 해당 학생의 가족에게 경고장을 발송해 교육의무와 위반 시 상응하는 형법 상의 징벌에 대한 정보를 통보한다. 지방교육청장은 해당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와의 만남을 이행하며 교육적인 내용의 조치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장기 결석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으며, 상기 통보에 따라 관련 기관은 가정방문이 포함되는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sup>10)</sup>

10) *Ibid.*, 제L131-8조.

## (2) 10일 이상의 장기 결석

학교장은 교육단체 위원회의를 소집해 해당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와 더불어 장기결석 해결에 적합한 지원과 동반 프로그램을 구상한다. 또한 해당 학생의 학업 복귀를 위한 보조조치를 제안하며 해당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와의 대화를 유지한다.

이후 학교장은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담당 교직원을 선발해 해당 학생에게 특화된 개인적인 학업 지원을 보장한다. 상기 교직원은 교사, 교감, 사회보장담당직원, 간호원, 교육자문위원, 정신상담직원 또는 연구위원장 중에서 지정한다.<sup>11)</sup>

상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장기결석이 지속될 경우, 지방교육청장은 등기우편을 통해 해당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를 소환할 수 있으며, 법적 의무를 환기시키며 새로운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결석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방교육청장은 검찰에 해당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를 고발한다.<sup>12)</sup>

## (3) 검찰 고발

2013년 1월 31일자 법률에 의해 폐지된 2010년 9월 28일자 학교결석방지에 관한 법률(일명 씨오티법률)에 따라 ; 결석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에 대한 경고, 소환 및 징벌조항은 아직도 상기 법률에 의해 개정된 교육법전의 관련조항에 반영되고 있다. 1882년 페리법률 제정 이후, 아동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에게 아동의 학교출석 태만에 대한 징벌이 가능하다. 한편 2013년 1월 31일자 법률은 현실성을 상실한 씨오티법률의 가족연금 중지절차와 부모책임 계약조항을 삭제했다. 상기 법률은 공동교육 정신에 입각해 학부모와의 대화를 강조했으며, 최초 결석이 발생하는 시기부터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에 지원을 규정한다.

11) *Ibid*, 제L111-3조, 제L131-8조.

12) *Ibid*, 제R131-7조.

상기 장기결석 해결을 위한 조치와 모든 화해조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생의 장기결석이 유지되는 경우, 장기결석을 종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법상의 징벌규정을 적용한다. 관할 학구교육청장은 장기결석 학생을 방치한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관할 학구교육청장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결석사유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결석사유를 제출해 아동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학업의무준수를 부과하지 않은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에게 4급 단계의 벌금형에 규정된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법적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미성년아동의 건강, 안전, 도덕성 또는 교육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에게 최고 2년 징역 및 30,0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한다.<sup>13)</sup>

상기 조항에 준거해 2015년 2월 9일 발랑시엔느 교정법원은 12세 아동의 장기결석을 방치한 모친에 대해 4개월의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6학년을 낙제한 해당 학생은 2012~2013년 학기동안 거의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낙제한 다음 해에도 79일 간의 장기결석을 했다. 아동의 장기결석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친은 정당한 의료진료서의 제출없이 아동의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교육당국과의 모든 접촉을 거부했으며 교육당국이 제공하는 학부모 동반프로그램에도 참여치 않고 아동법원이 지정한 교육단체와의 협조도 거부해 아동의 의무교육이수 불이행을 방치했다.<sup>14)</sup>

2010년 5월 20일 라옹 교정법원은 중학교에 재학하는 두 딸의 지속적이 장기결석을 방치한 모친에 대해 2개월의 징역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모친의 14세와 15세 중학생 두 딸은 2008~2009년 학기동안 첫째 딸은 279일, 둘째 딸은 94일 간의 장기결석을 행했다. 검찰은 해당 모친에 대해부모의 양육의무와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 이행의무 태만에 대한 고발을 진행해 상기 선고를 이끌어냈다.<sup>15)</sup>

13) *Ibid*, 제L131-9조, 형법전 제R624-7조, 제227-17조.

14) *Le Monde*, *Quatre mois de prison avec sursis pour l'absentéisme scolaire de son fils*, 10 février 2015.

15) *Le Monde*, *Une mère condamnée à de la prison avec sursis pour les 373 demi-journées d'absentéisme de ses deux filles*, 27 mai 2010.

언급한 두 개의 판결은 드물지만 아동의 장기결석을 방지한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에 대한 엄중한 프랑스 사법적용과 장기결석 방지를 위한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IV. 장기결석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

프랑스 정부는 2015~2016년 교육정책에서 학생의 학업낙제를 방지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장기결석방지를 강조한다. 즉, 기존의 장기결석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에 대한 경고와 징벌의 원칙을 보완하는 장기결석방지계획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원칙에 근거를 둔다.

- 다양성: 결석사유의 다양성을 고려하며, 교육분야 종사자, 즉 가족, 국립교육기관종사자, 시민단체, 대중교육운동단체, 교육에 관한 도시정책 등을 망라하는 모든 관련자의 개입을 유도한다.
- 반응성: 장기결석에 대한 즉각적인 방지조치 이행이 가장 효과적임을 감안해서 결석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에 대한 지원조치를 즉시 실행한다. 즉 부모지원대책 또는 지방의회의 사회복지지원대책은 결석 초기 단계부터 실행한다. 지속적인 결석이 발생할 경우, 각 해당 결석학생에 지정된 담당자와 더불어 학교 내에서 해당 학생의 법적 책임자 또는 부모에 대한 동반지원절차를 실행한다. 또한 프랑스 전국 학구에 동일한 장기결석방지 정책 실행을 위해 제정 중인 법제는 다음과 같다.
  - 교육법전의 시행편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된 모든 법제를 교육법전에 포함시키는 참사원(최고행정법원) 법령 제정 추진 및 상기 법령 초안에 대해 고등교육위원회는 2014년6월12일 긍정적인 의견을 발표했으며, 상기 법령 초안은 2014년 참사원의 법령심의에 상정되었다.

- 장기결석방지를 위한 새로운 법제를 고려하고 담당 기관 간의 협력방식을 구체화하기 위한 행정부처(교육부, 법무부, 가족부, 도시정책부) 간 공고문 초안을 작성한다. 또한 장기결석으로 인한 학업포기와 낙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부대책은 다음과 같다.
  - 학교 내의 교육담당팀과 외부 교육관련 기관과의 협력 개발 강화: 학업, 사회적응, 결석, 가족불화로 학교생활에 장애를 겪는 학생 확인 및 해결책 지원을 통한 결석 방지 및 학업성취도 향상
  - 학부모와 학교 간의 대화 강화: 초등학교에 적용했던 학생, 가족 및 학교 간의 공동교육지원책을 중고등학교로 확대적용. 학교 내 정기적인 만남을 위한 학부모를 위한 공간 배치, 특히 외국인 학부모의 프랑스어 습득과 학교내부규정 이해를 돕기 위한 지원책인 '사회적 통합 성공을 위해 부모를 위한 학교개방' 지원을 25% 확대
  -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및 향상을 위한 학업성취주간 설정
  - 장기결석방지와 학업성취를 위해 관련 업무 종사자, 즉 학교장, 교사, 교육공무원, 시민단체회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확대: 상기 인원을 대상으로 학생의 성적향상과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의 연수 확대. 또한 교사들을 상대로 학업의욕상실로 인한 낙제, 장기결석, 갑작스런 학업태도변화, 학업성적하락 등의 전조가 되는 징조에 대한 관심 유도
  - 관심 대상 학생 개인에게 특화된 맞춤형 동반 프로그램의 시험적 시도: 결석 및 학업성취에 문제를 가진 학생이 일시적으로 학교를 벗어나 개인의 현실 및 미래에 대한 숙고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업인턴 또는 봉사 등의 활동기회를 제공. 수 주 또는 최대 1년 간의 동반프로그램 참여기간을 학교출석으로 인정. 참여 학생의 상황분석에 기초해 가족과 학생 본인이 동반 참여하는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이 기간 내내 전문적 후견인의 지도하에 진행

- 성적 하락으로 인해 바칼로레아를 취득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새로운 기회 제공: 시험에 실패한 학생을 위해 출신학교에서 시험준비 허용 및 10점 이상의 과목점수 보존
- 장기결석 학생의 상황 이해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장기결석방지를 위한 감독팀 구성
- 장기결석으로 인한 학업성적 하락 학생에게 학교 내에서의 개인 맞춤형 학습 기회 제공: 전문 담당 교사를 지정해 해당 학생에 대한 새로운 학업기회 제공.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학년별 특성에 따른 상이한 내용의 학업 및 지원체계 구성. 고등학교 입학반의 경우, 학생진로 결정에 대한 개인상담지원을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 촉진. 고등학교 졸업반의 경우 1주 두 시간의 과외학습 제공. 학업성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의 결석 방지를 위해 미니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설립. 중고등학교 방학기간과 학기 중 수·토요일에 학교 개방행사 개최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유발
- 학생 진로설정 지원을 통한 결석 및 낙제방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폐쇄된 진로에 대한 학생의 좌절이 장기결석의 주요원인으로 파악해 2013년부터 학생과 가족에게 해당 학생의 진로에 대한 선택기회 제공. 2015년 학기부터 프랑스 모든 고등학교 학생에게 적용되는 ‘미래로 향한 여정’이라는 프로그램 운영. 각각의 학생이 장래 학업과 직업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학교외부의 경제, 직업환경에 대한 점진적인 적응과 각 경제 및 직업 분야에 대한 주도정신과 적응능력 개발 유도. 상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은 주도적인 진로결정능력 획득
- Folio 프로그램 운영: 예술 및 문화분야 학생을 위한 진로설정지원 프로그램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경제 및 직업과 진로 정보 제공<sup>16)</sup>

16) [http://www.education.gouv.fr/cid55632/la-lutte-contre-le-decrochage-scolaire.html#Un\\_plan\\_de\\_prevention\\_et\\_de\\_lutte\\_contre\\_l\\_absenteisme](http://www.education.gouv.fr/cid55632/la-lutte-contre-le-decrochage-scolaire.html#Un_plan_de_prevention_et_de_lutte_contre_l_absenteisme).

또한 장기결석방지를 통한 학업낙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유럽 2020전략’을 기초로 하는 프랑스 정책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sup>17)</sup>

|                     | 인간적 문제  | 사회적 문제   | 경제적 문제   |
|---------------------|---|--|--|
| 주요 쟁점               | 진정한 평가기회를 상실한 개인능력<br>장기결석으로 발생하는 학업능력저하가 야기하는 상실감:<br>- 자기비하<br>- 박탈감<br>- 학교수업에 대한 공포 등 | 학교 실패자가 일상적으로 겪는 불안정한 사회적 문제:<br>- 소외감<br>- 실업<br>- 건강<br>- 범죄위험에 노출 | 학교 실패자의 일생에 대한 경제적 손실로 최소 230,000유로에 달하는 초과비용 발생<br><br>매년 300억 유로 이상의 부채 발생 |
| 장기결석으로 인한 학업낙제방지 대책 | 철저한 학업관리감독을 통해 모든 학생에게 기회 제공  | 사회연대 유지  | 미래의 추가비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현재의 비용투자  |

장기결석방지를 통한 낙제방지 대책의 세 단계는 다음과 같다.<sup>18)</sup>

| 단계 | 정의  | 대상                                   | 예  |
|----|---|--------------------------------------|--|
| 예방 | 장기결석방지를 통한 끈기있는 학업복귀와 모든 학생의 학업성공을 지원하는 모든 정책전략, 기관 및 대책 수립   | 모든 학생 및 결석징후를 보이는 학생                 | 학업의무 관련 활동, 결석방지, 학업분위기 개선, 학생의 법적 책임자 및 부모 참여 등 |
| 지원 | 장기결석으로 인해 낙제가 예견되는 학생파악을 위해 실행되는 대책 및 활동. 상기 파악에 기초한 지원 활동 결정 | 장기결석으로 인해 낙제가 가능성이 있으나 학교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 학습동반 또는 교육사회 활동, 관련 대책 등                         |

17) Ministère éducation nationale, Evaluation partenariale de la politique de lutte contre le décrochage scolaire—Rapport de diagnostic, 28 mars 2014, p.6.

18) *Ibid*, p.14.

| 단 계 | 정 의   | 대 상                    | 예   |
|-----|---|------------------------|---|
| 해결책 | 해결책은 해당 학생의 학업 복귀, 낙제학생의 학위취득 및 안정적인 직업획득을 목표 | 장기결석 및 학업성적하락으로 인한 낙제생 | 학구 소속 담당 기관의 동반 프로그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프로그램, 2차 기회를 제공하는 특화학교, EPIDE (고용편입기구)의 청소년 취업 지원, 기업 인턴 및 연수를 통한 취업기회 확대 등 |

## V. 결론

프랑스는 국립 공교육의 5대 원칙에 포함되는 의무교육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서 학생의 결석없는 꾸준한 학업참여를 인지하고 장기결석방지를 위한 정책설립 및 실행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프랑스의 장기결석방지 정책은 예방, 지원 및 해결책 제시라는 세가지 원칙에 기초한다. 장기결석예방 차원에서 장기결석징후와 해당 학생의 개인적 환경을 파악한 후, 지원 차원에서 학교, 교육관련 기관, 교육관련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각 학생에게 특화된 개인동반프로그램과 해당 학생의 법적 책임자 및 부모에 대한 동반프로그램을 시행하다. 해결책으로는 학교 외에도 정부 차원의 기관과 시민단체 및 고용활성화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장기결석으로 인한 낙제학생의 학업복귀, 사회복귀 및 고용기회부여를 정책의 주 내용으로 삼아 시행하고 있다. 장기결석 학생이 학업복귀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며 상기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장기결석이 재발할 경우 해당 학생의 법적 책임자 및 부모에 대한 형법적 징벌을 부과함으로써 해당 학생의 학업복귀를 위한 강제적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

장기결석학생의 법적 책임자 및 부모에 대한 형법적 징벌은 매우 드문 경우지만, 자녀의 교육의무를 방기하는 법적 책임자 및 부모에 대한 교육의무 태만에 관한 사법당국의 징벌은 장기결석방지에 관한 매우 강력한 사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형법



상 징벌의 선고이유 중에 주목할 부분은 법적 책임자 및 부모의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교육의무 준수 위반보다는 민법상의 미성년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을 이유로 법정 징벌보다 상위의 징벌을 선고한 부분이다. 사법부의 관점은 학생의 장기결석을 방치한 부모의 교육의무 준수위반보다는 민법상의 미성년 부양의무위반을 강조한다는 점이 사법관련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상기 판례를 살펴보자면 프랑스 정부의 다양한 장기결석방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드물지만 심각한 수준의 장기결석으로 인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장기결석 방지대책의 효율성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장기결석방지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행과 시도는 장기 결석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저하와 사회부적응자 형성에 고심하는 타국 정부의 장기결석 방지 정책설립에 유용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학교의 장기결석 문제는 학교 내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님을 상기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장기결석의 징후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학교의 1차적 임무 외에도 장기결석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해당 학생의 가족환경, 사회적 환경 및 경제적 환경을 모두 아우른 범국가적인 지원대책과 해결방안을 필요로 한다. 교육, 사법 및 고용관련 행정부처의 긴밀한 협조와 장기결석 문제를 벗어나려는 학생 개인 및 가족 간의 합의 또한 중요하며, 이의 도출을 위한 동반지원프로그램 설립 및 실행이 중요하다.

**강 홍 진**

(프랑스 SAINT Consulting 대표)

### 참고문헌

DEPP, L'absentéisme des élèves continue à être très élevé dans une partie des lycées professionnels, Février 2015.

Ministère éducation nationale, Evaluation partenariale de la politique de lutte contre le décrochage scolaire—Rapport de diagnostic, 28 mars 2014.

Le Monde, Quatre mois de prison avec sursis pour l'absentéisme scolaire de son fils, 10 février 2015.

Le Monde, Une mère condamnée à de la prison avec sursis pour les 373 demi-journées d'absentéisme de ses deux filles, 27 mai 2010.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899>.

[http://www.education.gouv.fr/cid55632/la-lutte-contre-le-decrochage-scolaire.html#Un\\_plan\\_de\\_prevention\\_et\\_de\\_lutte\\_contre\\_l\\_absenteisme](http://www.education.gouv.fr/cid55632/la-lutte-contre-le-decrochage-scolaire.html#Un_plan_de_prevention_et_de_lutte_contre_l_absenteisme).